

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473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2년 2월 17일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조 조 제 목과 조문 중 “정수”를 각각 “수”로 수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안 제2조 조제목과 조문 중 “정수”를 각각 “수”로 수정함.

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 조제목 및 조문 중 “정수”를 “수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	수	정	안
제2조(검사위원의 정수) 결	산검사위원(이하 "검사위원"이라 한다)의 정수는 20	제2조(검사위원의 정수) 결	산검사위원(이하 "검사위원"이라 한다)의 정수는 15	제2조(검사위원의 수) 결산	검사위원(이하 "검사위원"이라 한다)의 수는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한다. 이	제2조(검사위원의 수) 결산	검사위원(이하 "검사위원"이라 한다)은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, 3명을 초과할 수 없다.
명	으로 한다. 이 경우 서울	명	이상 20명 이내로 한다.	상	20명	이	내
특	경우 서울	이	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	경	우	서울	특별
별	시	이	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	우	서울	특별	시
의	회	원	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	(이하	"	의원
원	"	은	전체 검사위원 수의 3	은	전체	검사	위원
은	전체	수	의 3	수	의 3	분	의
전	체	수	의 3	의 3	분	의	1
체	의 3	의 1	이하로 하며, 3명을	이하	로	하	며,
3	명	을	초과할 수 없다.	3	명	을	초
명	을	초	과할 수 없다.	과	할	수	없
을	초	과	할 수 없다.	할	수	없	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조제목 중 “정수”를 “수”로 하고, 조문 중 “정수”를 “수”로 하며, “20명으로”를 “15명 이상 20명 이내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검사위원의 <u>정수</u>) 결산검사위원(이하 "검사위원"이라 한다)의 <u>정수</u>는 <u>20명으로</u> 한다.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은 전체 검사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, 3명을 초과할 수 없다.</p>	<p>제2조(검사위원의 <u>수</u>) 결산검사위원(이하 "검사위원"이라 한다)의 <u>수는 15명 이상 20명 이내로</u> 한다.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은 전체 검사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, 3명을 초과할 수 없다.</p>